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국무조정실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채용분야	인원	직급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인권교육 및 제도·정책 연구	1명	전문임기제 나급 (5급 상당)	임용일~ '24.6.30.	대테러인권보호관지원반 (세종특별자치시)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주요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담당업무
인권교육 및 제도·정책 연구	○ 대테러 활동 인권분야 제도분석 및 정책연구 ○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 대테러 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상담 ○ 인권단체·전문가 교류·협력 및 기타 행정업무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22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69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3692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60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3호)

4. 채용자격요건 (기준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①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행위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② 응시자격요건 : [\[별지 1호\] 직무기술서\(응시자격요건\) 참조](#)

응시 자격 요건	자 격 종	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자
	학 위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하는 직무분야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응시요건에 필요한 경력 제외) · 정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직무분야와 관련된 수상실적 (개인성명이 기재된 상훈일 경우에만 인정, 단체 제외 / 건수별 차등 우대)
< 관련용어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 경력 : 정부·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법률상담 및 자문, 교육·홍보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관련 근무경력 ■ 직무분야 학위 : 법학, 정치외교학 등 인권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 		

③ 우대요건 : [\[별지 1호\] 직무기술서\(우대요건\) 참조](#)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하는 직무분야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 근무경력 : 정부·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법률상담 및 자문, 교육·홍보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관련 근무경력
○ 정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직무분야와 관련된 수상실적 (개인성명이 기재된 상훈일 경우에만 인정, 단체 제외 / 건수별 차등 우대)

< 참 고 >

○ 공 통

- 자격증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일하여 응시**해야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권고사항)

○ 경 력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해 인정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연월일)·상근여부·담당업무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누락되는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시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또는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주의)**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근무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 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필요 **(미제출 또는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주의)**

○ 학 위

-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5.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규정상 연봉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업무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채용직급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79,257천원	52,811천원

6. 시험방법

①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로 결정
- ※ 서류심사 기준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수상실적 등

②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7.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3.9.25.(월)~'23.10.5.(목)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원서접수	'23.9.25.(월)~'23.10.5.(목)	■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우편, 방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10.20.(금)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면접심사	'23.10.24.(화)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3.11.1.(수)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http://www.opm.go.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9. 25.(월) ~ '23. 10. 5.(목), 09:00~18:00
 -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 제외)** 내에만 가능
 -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봉투 겉면에 "응시분야 및 직급" 기재
 -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국무조정실 인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인사과 채용담당자
 - (우편번호) 30107
- 응시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배부

9. 제출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 : 필수 제출 >

-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나급 : 10,000원) 첨부
 - ※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
- ②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 ※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
-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 ※ A4 2매 내외(형식·구성 자유)
- ④ 직무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1부 <별지 5호 서식>
 - ※ A4 5매 내외, '요약서'는 A4 1매로 작성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 개별사항 : 해당자만 제출 >

① 자격증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별지 8호 서식>

※ 재직기간(연월일),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 등 반드시 기재
- 비상근 근무시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예: 주당 30시간)

- 담당업무 미기재시 관련분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학위·연구논문은 A4 1매 이내의 별도 논문요약서 첨부 <별지 9호 서식>

※ 논문의 표지·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당 증명서는 응시요건 확인 및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④ 직무분야 관련 수상(표창 등) 증빙자료 사본 1부

※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수상(표창 등)

⑤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 외국인 제출 불필요)

10.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 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반환청구서(별지서식 10호)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원본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메일주소 : opminsa@korea.kr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3.11.1(수)~'23.11.7.(화)
- 응시인원이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합격자의 경우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내역,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경력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동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담당자 : 044-200-2801)